

#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유형별 주요내용 및 개선대책<1>

김임순, 최원욱, 한상욱

아태환경 · 경영연구원

## 목 차

### 1. 서론

### 2.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변천과 현행제도

#### 가. 환경영향평가 단일제도하에서의 관련법령의 변천

- |   |                  |
|---|------------------|
| 1) 환경보전법                                  | 2) 환경영정책기본법      |
| 3) 환경영향평가법                                |                  |
| 나. 환경영향평가 단일제도하에서의 주요내용의 변화와 성과           |                  |
| 1) 환경영향평가법의 기본체계                          | 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변천  |
| 3) 연도별·대상사업별 혐의실적                         |                  |
| 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 평가<br>제도 |                  |
| 1) 통합평가법의 제정배경 및 주요변경 사항                  |                  |
| 2) 통합평가법의 법령체계 및 영향평가절차                   |                  |
| 3)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등                            | 4)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
| 5) 환경영향평가서의 혐의등                           | 6) 혐의내용의 관리 등    |

#### 3. 환경정책기본법 및 개별법령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제도

##### 가.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도입 배경 및 전망

##### 나.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의의 및 변천

- |                             |                  |
|-----------------------------|------------------|
| 1)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의의            | 2)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변천 |
| 다. 환경영정책기본법령 체계와 사전환경성검토 제도 |                  |
| 1) 환경영정책기본법령 체계             | 2) 사전환경성검토의 유형   |
| 3) 사전환경성검토제도 혐의실적           |                  |
| 라. 현행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주요내용       |                  |
| 1)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의 분류            |                  |
| 2) 환경영정책기본법령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제도  |                  |
| 3) 개별법령에 의한 환경부와의 협의대상 행정계획 |                  |
| 마. 건설사업의 환경영성조사·검토지침        |                  |
| 1) 제정경위 및 기본방향              |                  |
| 2) 건설사업의 환경영성 조사·검토제도       |                  |

#### 4.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제도

##### 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위상변화와 지방제도회의 요구증대

- |                                |  |
|--------------------------------|--|
| 나. 지방환경영향평가제도화에 따른 문제점 및 선결 과제 |  |
| 1) 지방환경영향평가제도화에 따른 문제점         |  |

#### 2) 시장환경영향평가제도화에 따른 선결과제

- |                        |             |
|------------------------|-------------|
| 3) 국가제도와 지방제도의 차이점     |             |
| 4) 지방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시 고려사항 |             |
| 다. 지방환경영향평가의 제도화 방향    |             |
| 1) 평가대상의 설정            | 2) 평가항목의 선정 |
| 3) 환경영향평가절차            | 4) 평가담당주체   |

#### 5. 지속성의 구현을 위한 새로운 전략환경평가

- |   |             |
|---|-------------|
| 가. 정책의 계층적 구조와 의사결정 체계                  |             |
| 나. 환경영향평가의 핵심성과 SEA의 필요성                |             |
| 1) 연계된 개발로부터 이어지는 환경영향에 대한 고려의 한계       |             |
| 2) 사업대안의 경토 제약                          | 3) 누적영향의 간파 |
| 4) 복수의 소규모 사업과 규제 관련한 사업에 대한 통합적 관리의 한계 |             |
| 다. 전략환경평가의 유형과 접근방법                     |             |
| 라. 전략환경평가의 도입실태와 기대효과                   |             |
| 1) 세계 주요국가의 도입실태                        |             |
| 2) 전략환경평가의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             |

#### 6.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을 위한 대책방안

- |                                    |                   |
|------------------------------------|-------------------|
| 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                   |
| 1) 국내외 제도의 주요 내용                   | 2) 국내외 제도의 주요 차이점 |
| 3) 외국제도에 비춰 본 국내제도의 문제점            |                   |
| 4) 국내제도의 개선을 위한 교제                 |                   |
| 나.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개선방안 및 향후과제          |                   |
| 1)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근원적 개선대책             |                   |
| 2) 사전환경성검토제도 운영상 보완대책              |                   |
| 3) 건설사업의 환경영성조사·검토지침과의 조화          |                   |
| 다. 사전환경성검토도구로서의 전략환경평가의 도입         |                   |
| 1) 사전환경성검토와 전략환경평가의 차이점            |                   |
| 2) 사전환경성검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략환경 평가의 도입 |                   |
| 3) 전략환경평기도입에 따른 기본이념의 구축 및 전제조건    |                   |
| 4) 전략환경평기제도화에 따른 유의사항              |                   |

#### 7. 결론

## 1. 서론

개발활동으로 인한 환경훼손과 환경오염의 예방을 위한 정책도구로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있다. 국내에서는 명칭을 달리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사업환경영향평가제도라고도 함)와 사전협의제도(사전환경성검토협의제도라고도 함)가 도입운영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에서는 관할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례에 근거한 지방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이를 총칭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라고 한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1981년이후 환경보전법, 환경정책 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되어 왔다. 사전협의제도는 이전부터 개별법령이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국무총리훈령으로 제정된 「행정계획 및 사업의 환경성검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되어 왔다.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1997년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처음 도입근거가 마련되었고 2001년부터 시행된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서 그 근거를 이어받았다.

그간 환경영향평가는 정책, 계획, 프로그램, 사업으로 구체화되는 정책의 계층구조에서 주로 사업을 대상으로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입지대안 검토의 제약, 누적 영향의 간과, 환경민감지역내 소규모개발사업의 환경영향 평가대상에서의 제외와 함께 교통영향평가제도, 재해영향 평가제도, 인구영향평가제도와의 병렬·시행에 따라 행정기관 및 사업자에게 이중적인 부담이 되어왔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 운영에 있어서도 상당한 행정계획과 난개발의 원인이 되어왔던 민간개발사업이 협의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환경성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구비요건과 협의결과의 행정계획에의 반영에 있어서도 근거규정의 미흡으로 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어왔다. 또한 자치단체별로 지역특성이 고려된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그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

영향평가법(이하 통합평가법이라 함)의 제정(1999. 12. 31, 법률 제6095호, 2001. 1. 1일부로 시행)과 사전협의 규정의 근거를 법률에 두기위한 환경영정책기본법의 개정(1999. 12. 31, 법률 제6097호) 및 사전협의 대상의 종류·규모, 시기 및 방법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동법 시행령 개정(2000. 8. 17, 대통령령 제16954호, 같은 날짜로 시행)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보다 강화된 제도적인 면모를 갖춰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통합평가법에서 사실상 별개제도로 위치하고 있는 환경, 교통, 재해, 인구영향평가제도를 환경영향평가제도에 실질적으로 통합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또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제도도 같은 법체계에 두고 정책, 계획, 프로그램, 사업에 대한 단계별로 평가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환경평가제도(계획환경영향평가제도 또는 정책환경영향평가제도라고도 함)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도 20년이 되었고 이에 대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개혁을 표방해온 정권의 교체도 몇차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 할거주의와 기득권을 고수하고 이를 비호하는 일부집단들에 의해 행정과 국민에게 실익이 없는 부실한 대표적인 제도가 되고 있다. 더욱이 통합평가가 국민의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스케줄대로 개선되지 않은채 방치되고 있는데 대한 비판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발전동향과 현행제도, 환경정책기본법과 개별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제도,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지속성의 구현을 위한 새로운 전략환경평가와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을 위한 대책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 2.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변천과 현행제도

### 가. 환경영향평가 단일제도하에서의 관련법령의 변천

우리 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정책의 태동기였던 1970년대 후반 환경보전법(77.12)의 제정과 함께 도입되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의 주무부서였던 보건사회부의 환경행정 관련조직의 미약으로 시행을 미루어 오다가 1980년 환경청의 설립되고 환경청에 의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이 고시(81. 2)되므로서 시행되게 되었다. 1990년 환경처의 설치와 더불어 환경정책 기본법(90. 8 제정, 91. 2 시행)의 제정을 거쳐 환경영향 평가법(93. 6)이 제정되어 환경영향평가 단일제도로 2000년 말까지 시행되어 왔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의 제정(99. 12) 및 시행(01. 1)으로 환경, 교통, 재해, 인구영향평가제도가 같은 법에 근거를 두게 되므로서 개별법에 근거한 환경영향평가 단일제도는 종지부를 찍었다. 환경영향평가단일제도의 근거법과 변천내용을 개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1)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 제정 이전의 개정된 공해방지법(1971년) 제 16조(공해사전대책)에서 [도시개발, 산업입지의 선정·조성 및 준비에 관한 시책의 책정과 실시에 대해 지리·기상·수리·산업 분포 등의 사항을 조사한다.]라는 환경영향평가 관련규정이 있었으나, 이를 근거로 환경영향평가를 제도화 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1977년 제정된 환경보전법 제5조 [사전협의]라는 표제 하에 [도시의 개발이나, 산업입지의 조성, 에너지 개발 등 환경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계획에 관하여 미리 보건사회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환경보전법의 거듭된 개정과 더불어 제도의 기반이 확립되게 되었다. 1979년 개정된 환경보전법 제5조[환경영향평가 및 협의]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 조성, 에너지 개발, 도로 건설, 수자원 개발, 공

항 건설,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 규정함으로써 평가 대상사업의 범위가 보다 명확하게 되었다. 또한 1981년 환경보전법의 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주체를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공공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으로 확대하였다. 1986년에 개정된 환경보전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부문의 개발사업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민간이 개발하는 관광단지개발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추가되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11개 분야 32개 단위 사업으로 확대되었다.

### 2) 환경정책기본법

1990년 환경청이 환경처로의 승격과 함께 환경보전법은 폐지되고 헌법에 규정된 환경권을 수용 환경정책의 기본 이념과 시책방향에 대한 규정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환경정책기본법 등으로 개별법화하는 과정에서 종전의 환경보전법에 근거를 둔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환경정책기본법으로 이관되면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도 대폭 보완·강화되었다. 대상사업의 경우 종전의 11개 분야 32개 단위사업에서 15개 분야 47개 단위사업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최종평가서의 작성, 평가협의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재협의 및 협의 내용의 이행여부조사·확인 등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도입하므로서 평가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하였다. 1992년 8월에 개정된 동법 시행령에서는 환경영향평가가 정형화될 수 있는 개발사업과 지역단위의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협의 업무를 지방환경청으로 위임하므로서 현지성 있는 환경영향평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3)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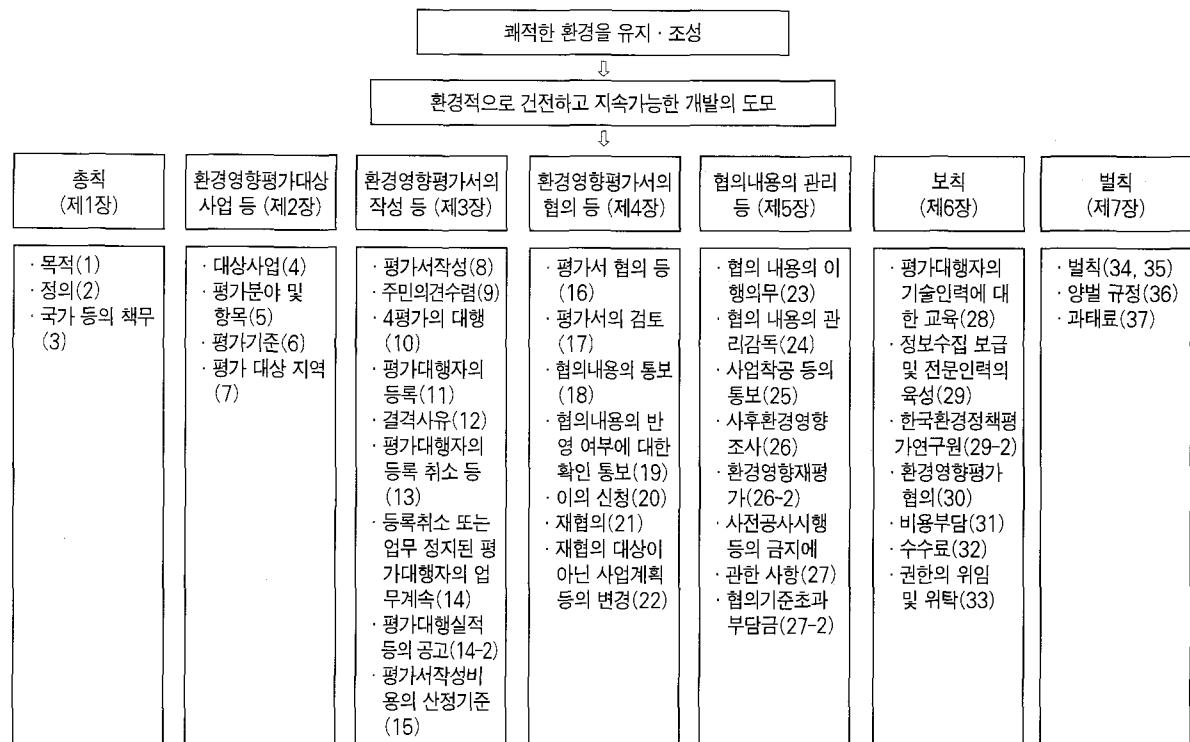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시기, 협의절차 등 구체적이고 집행적인 사항까지 정하므로서 상황의 변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과 그간의 제도 운영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제도 운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1993년 6월 환경영향평가 단일법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을 제정하였고, 동년 12월부터 시행되었다. 1997년 3월에는 동법에 대한 제1차 개정에 따라 대상사업이 종전의 16개 분야 59개 단위 사업에서 17개 분야 63개 사업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국가의 기본시책으로 천명된 환경영향평가제도에 관한 조문(제26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제27조(환경영향평가서 겸토) 및 제28조(사후관리))이 삭제되어, 법체제상 환경영향평가제도와 환경정책의 연계고리를 단절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 나. 환경영향평가 단일제도 하에서의 주요내용의 변화 및 성과

현행 통합평가법에 근거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평가구조와 기본적으로 대동소이한 환경영향평가법의 기본체계와 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을 거쳐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제도의 근거법이 바뀌고 개정되는 과정에 대한 사항과 성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 1) 환경영향평가법의 기본체계

환경영향평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환경영향평가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었고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협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등에서 정하고 있었다. 1993년 6월에 제정되고 1997년 3월에 1차 개정



〈그림 3-1〉 환경영향평가법 체계

되고 1999년 2월 2차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은 총칙,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등, 협의내용의 관리 등, 보칙, 벌칙 등 7개 장 41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법령체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3-1 참조).

## 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변천

우리 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성장 위주의 개발 우선의 국가정책 기조 하에서 환경에 대한 인식이나 자료, 기구, 인력 등 환경정책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태에서 도입되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시기반이 구축되기도 전에 환경보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의 분출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취지를 간과한 정치세력이 연계되어 계획과정에 편입되어 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본질과는 동떨어진 개발을 억제하는 도구로 변질되는 법개정이 거듭되므로서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규제

적인 제도가 되었다. 이와 함께 운영면에서 이미 정부가 결정한 사업내역의 변경 요구, 사업 자체의 속성을 무시한 사업 규모의 축소 요구, 이미 다른 법령에서 규제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요구,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없는 사항 등이 협의 의견으로 제시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와 사업자, 사업자와 주민과의 마찰, 사업의 자연 등의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계획과정에 있어서 개발과 보전의 조화 도모라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본질에 입각한 사회적 협의 형성,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의견의 수렴 및 행정의 민주성, 효율성 등을 실현시키는데 미흡한 제도가 되어 왔다. 특히 평가대행자의 지정제도, 평가비용의 산정 기준 설정,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환경영향평가서의 일률적인 작성, 협의기준 초과부담금 제도 등은 어느 나라에서도 그 예를 찾아 볼 수 없는 우리나라 특유의 규제일변도적인 대표적인 사례가 되어 왔다. 환경영향평가제도 근거법령의 변경과 더불어 환경영향평가 단일제도에서 그간의 변천과정과 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3-1 참조).

〈표 3-1〉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변천 (환경영향평가 단일법 체제)

근거법 주요내용	환경보전법 (1977~1991)	환경정책 기본법 (1991~1993)	환경영향평가법 (1993~2000)
법령제 ·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제정(77. 12)</li> <li>-영제정(78. 6)</li> <li>· 법 1차개정(79. 12)</li> <li>-영 1차개정(80. 8)</li> <li>· 법 2차개정(81. 12)</li> <li>· 법 3차개정(85. 12)</li> <li>-영 3차개정(83. .4)</li> <li>· 법 4차개정(86. 12)</li> <li>-영 4차개정(87. 6)</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제정(90. 8)</li> <li>-영제정(91. 2)</li> <li>-영 1차 개정(92. 8)</li> </ul> <p>※환경정책 기본법은 환경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법으로서 하위 법령으로 시행령만 제정도록 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제정(93. 6)</li> <li>-영제정(93. 12)</li> <li>-규칙제정(93. 12)</li> <li>-영 1차개정(95. 4)</li> <li>· 법 1차개정(97. 3)</li> <li>-영 2차개정(97. 9)</li> <li>-규칙 2차개정(97. 10)</li> <li>-영 3차개정(98. 12)</li> <li>-영 4차개정(99. 2)</li> <li>· 법 2차개정(99. 2)</li> <li>-규칙 3차개정(99. 2)</li> </ul>
근거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제정시(77. 12)</li> <li>-법제5조(사전협의)</li> <li>-영제4조(환경영향평가서의작성)</li> <li>· 법제1차개정시(80.8)</li> <li>-법제5조(환경영향평가 및 협의)</li> <li>-영제4조(대상사업)</li> <li>-영제4조의2(평가서의 작성)</li> <li>-영제4조의3(협의절차)</li> <li>· 법제2차개정시(81. 1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제26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li> <li>-법제27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li> <li>-법제28조(사후관리)</li> <li>-법제4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li> <li>-영제7조내지 제15조</li> </ul> <p>※국가 환경정책의 기본적 사책으로 규정되었던 상기 제26조~28조는 환경영향평가법 제정시 삭제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칙(제1장)</li> <li>-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제2장)</li> <li>-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등(제3장)</li> <li>-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등(제4장)</li> <li>-협의내용의 관리 등(제5장)</li> <li>-보칙(제6장)</li> <li>-벌칙(제7장)</li> </ul> <p>※제1차 법 개정시 다음 규정이 추가됨</p>

근거법 주요내용	환경보전법 (1977~1991)	환경정책 기본법 (1991~1993)	환경영향평가법 (1993~2000)
근거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제5조의2(환경영향평가의 대행)</li> <li>-법제3차개정시(83.4)</li> <li>-영 1981 대상사업의 범위 및 협의 요청시 기 추가</li> <li>-법제4차개정시(86. 12)</li> <li>-법제5조(환경영향평가서 작성)</li> <li>-법제5조의2(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및 의견제시)</li> <li>-법제5조의3(환경영향평가의 대행)</li> <li>-영 제4조의3(협의결과의 통보)로 변경하고 (별표1) 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가대행실적 등 공고(제14조2)</li> <li>-환경영향제평가(제26조의2)</li> <li>-협의기준초과부담금(제27조의2)</li> <l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제29조의2)</li> </ul> <p>※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99. 1)제정에 따라 동법으로 설립 근거 이관</p> <p>-허위평가서 작성에 따른 벌칙</p>
평가대상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제정시(77. 12)</li> <li>-3개분야(도시의 개발, 산업입지조성, 에너지개발)</li> <li>-법1차개정시(79. 12)</li> <li>-6분야로 확대(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조성, 에너지개발, 도로건설, 수자원개발공업환경설)</li> <li>-영 1차개정시(80. 8)</li> <li>-10개 분야로 확대</li> </ul> <p>※ 대통령령에서 4개사업 추가 (철도의 건설, 공항의 건설, 매립 및 개간사업, 아파트지구 개발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3차개정시(83. 4)</li> <li>-11분야(30개 단위사업) 확대</li> </ul> <p>※ 관광단지 개발사업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4차개정시(86. 12)</li> <li>-11개 분야(32개 단위사업)으로 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제정시(90. 8)</li> <li>-15개분야 47개 단위사업</li> <li>-6개 법령에서 정한 사업(도시의개발,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조성, 에너지개발, 도로의건설, 수자원개발, 항만건설)</li> <li>-9개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철도의 건설, 공업항의 건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매립 및 개간사업, 관광단지의 개발, 체육시설의 설치, 산지의 개발, 특정지역의 개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li> </ul> <p>※ 하천의 이용개발 산지 개발 특정지역개발 폐기물 처리시설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제정시(93. 6)</li> <li>-16개 분야(국방, 군사시설 추가) 59개 단위사업 (유원지·경륜경정·청소년 수련시설·학교·체육·체육시설·여객터미널 등 추가) 영1차개정시(95. 4)</li> <li>-17개 분야(토석·보래·자갈·광물 등 채취 추가) 62개 단위사업(경마장·해안규사·해안모래채취 추가)</li> <li>-법1차개정시(97. 3)</li> <li>-17개 분야 63개 단위사업(저유시설, 고속철도, 신항만 건설사업 추가, 발전용 원자로, 저수지제외)</li> <li>-시·도의 대상사업 추가(조례)</li> </ul>
평가분야 및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청 고시 제81-4호 81.2.28)에 의거 3개분야 19개 항목 설정</li> <li>-자연환경(5) : 기상, 지형지질, 생태계, 해양, 천연자원</li> <li>-생활환경(8) : 토지이용, 대기질, 수자원, 수질, 토질, 폐기 물, 소음진동, 악취, 위락, 경관</li> <li>-사회경제환경(6) : 인구, 산업, 주거, 공공시설, 교통, 문화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청 고시 제91-30호 91.5.11)에 의거 3개 분야 22개항목으로 조정</li> <li>-자연환경(4) : 친연자원 제외</li> <li>-생활환경(11) : 전파장해, 일조장해, 위생보전 추가</li> <li>-사회경제환경(7) : 교육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1995-70호, 95.6.25)에 의거 3개 분야 23 항목으로 조정(자연환경분야에 수리수문 추가)</li> <li>-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1997 ~ 95호, 97.10.25)고시</li> </ul>
평가서 작성주체	사업자	사업자	사업자
평가서 작성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2차 개정시(79. 12)</li> <li>-평가대행자제도 도입</li> <li>-환경청공고(제83-295호) 83.12. 58개 대행자 지정</li> <li>-이후 '86.1. '88.1. '90.1 매 2년마다 평가대행자 일괄 지정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91.6.25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규정" (환경처고시 제91-38호) 제정고시로 평가대행자 I. II. III. 군으로 분류, 행정처분 등 도입)</li> <li>-'93.3.23 동 규정 개정(환경처고시 제93-24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제정시(93. 6)</li> <li>-동규정 폐지 환경영향평가법령에 수용법1차 개정시(97. 3)</li> <li>-평가대행자가 사업자와 독점규제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관계에 있는 경우 대행 불가법1차 개정시(97. 3)</li> <li>-환경부장관이 매년 1회이상 평가 대행실적공고 법2차 개정시(99. 2)</li> <li>-대행자 지정체계를 등록제로 변경</li> <li>-사업자와 계열회사 관계있는 평가대행자의 대행허용</li> </ul>
평가서 협의 요청자	법제정시(77. 12)	법제정시(90. 8)	법제정시(93. 6)

근거법 주요내용	환경보전법 (1977~1991)	환경정책 기본법 (1991~1993)	환경영향평가법 (1993~2000)
평가서 협의 요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자(행정기관의 장)</li> <li>법2차 개정시(81. 12)</li> <li>-사업자(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 및 정부투자기관)</li> <li>법3차 개정시(82. 12)</li> <li>-사업자(민간사업자 추가)</li> </ul> <p>){{ 법제정시(90. 8) -사업자(인허가기관을 경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자(인허가기관을 경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승인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li> </ul>
주민의견 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제정시(90. 8)</li> <li>-평가서 초안의 공고(지방일간지에 공고) 공람(20일)</li> <li>-필요시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91.8.1 시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제정시(93. 6)</li> <li>-평가서초안의 공람기간연장(30일), 의무적으로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li> <li>· 영1차 개정시(95. 4)</li> <li>-공고방법 개선(중앙일간지로 확대)</li> <li>-공청회 개최시기의 조정(임의공청회의 개최시 기를 공람기간후로 변경)</li> <li>· 법1차 개정시(97. 3)</li> <li>-평가서초안의 공람기간 30일 이상 50일 이내(공휴일 불산정)</li> <li>· 법2차 개정시(99. 2)</li> <li>-사업자의 주민의견수렴에 소요되는 비용부담규정 삭제</li> </ul>
평가서 검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제정시(77. 12)</li> <li>-보건사회부 장관</li> <li>· 법 1차 개정시(79. 12)</li> <li>-환경청장</li> <li>· 법 4차 개정시(86. 12)</li> <li>-환경청장</li> <li>-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자문위원(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제정시(90. 8)</li> <li>-환경처장관</li> <li>-환경영향평가분과위원회 위원(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제정시(93. 6)</li> <li>-환경처장관</li> <li>-환경영향평가분과위원회 위원</li> <li>-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li> <li>· 법1차 개정시(97. 3)</li> <li>-환경부장관</li> <li>-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li> <li>-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li> </ul> <p>※환경영향평가분과위원회 위원 삭제</p>
사업승인 기관과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제정시(77. 12)</li> <li>-없음</li> <li>· 법4차 개정시(86. 12)</li> <li>-환경청장의 협의결과 반영요청에 대하여 인허가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조치(영 제4조의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제정시(90. 8)</li> <li>-환경처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계획의 조정, 보완 등 필요한 조치요청(법 제27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제정시(93. 6)</li> <li>-승인기관의 장은 협의내용 반영여부확인 및 그 내용통보(법 제19조)</li> <li>· 법2차개정시(99. 2)</li> <li>-협의내용검토시 사업계획의 조정또는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협의내용의 통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li> </ul>
이의신청,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제정시(90. 8)</li> <li>-사업자의 이의 신청(영 제12조)</li> <li>-재협의: 토지면적, 길이, 건축물 면적이나 10% 이상 증가할 경우, 다만 경미한 변경의 경우 환경처장관의 협의를 거쳐 제외가능(영 제12조)</li> <li>-변경협의: 재협의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시 사업자는 환경처장관과의 의견을 들어야 함(작성규정 제36조)</li> <li>-재협의 요건을 토지면적 등의 30% 이상 증가로 완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제정시(93. 6)</li> <li>-이의신청: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신청(법 제20조)</li> <li>-재협의: 건축물 면적의 증가를 제외하고 최소 사업규모 이상의 증가를 포함,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따른 재협의 제외(법 제21조)</li> <li>-변경협의: 사업자는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갖구하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법 제22조)령2차개정시(97. 9)</li> <li>-이의신청기간 60일로 연장</li> <li>-협의내용을 통보받고 5년이내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재협의</li> <li>-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중대한 환경영향이 발생하는 공공사업은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이 재평가</li> <li>-사업규모의 15% 이상 증가 등의 경우 반드시</li> </ul>

근거법 주요내용	환경보전법 (1977~1991)	환경정책 기본법 (1991~1993)	환경영향평가법 (1993~2000)
이의 신청,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함</li> <li>· 법3차개정시(98.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의신청기간 90일로 조정</li> <li>-협의내용을 통보받고 5년이내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를 7년으로 조정</li> <li>-공장의 부지면적만 증가시키는 경우로서 추가적인 자연환경의 해손 또는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경우 재협의대상에서 제외</li> </ul> </li> </ul>
협의내용 관리 및 관리주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차 개정시(82.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기간 40일 (작성규정(제84-5호) 제10조)</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령개정시(90.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환경관리청장의 사후관리</li> <li>-협의내용 미이행시 이행촉구</li> <li>-사업의 일시중지 등 필요한 조치 요청</li> <li>-사업착공 등의 신고</li> <li>-사전공사시행금지</li> <li>-이 행계획서 제출</li> <li>-사후환경관리계획의 반영</li> </ul> </li> <li>· 영1차개정시(92.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협의기간 60일(영 제11조)</li> <li>-협의업무의 일부를 지방환경청에 위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령개정시(93.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승인기관의 장 및 지방환경청장의 협의내용 관리 감독</li> <li>-협의내용 미이행 또는 사전공사시 공사 중지 (승인기관) 또는 공사 중지 명령요청(지방환경청)</li> <li>-공사명령위반시 벌칙(5000만원, 5년)</li> <li>-협의내용관리대장 및 관리책임자 도입</li> <li>-사후환경영향조사의 법제화</li> <li>-평가대행자 지정관리업무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li> </ul> </li> <li>· 영 1차개정시(95.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협의업무로 지방환경청에 위임된 200만㎡ 이상 일부사업 환경부로 변경</li> </ul> </li> </ul>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1차개정시(97.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협의기준을 초과하여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초과부담금 신설</li> <li>-배출시설의 경우</li> <li>-황산화물등 10몰질(대기)</li> <li>-유기물질등 17몰질(수질)</li> <li>-기타시설의 경우</li> <li>-유기물질</li> <li>-부유물질</li> </ul> </li> <li>-사후환경영향 조사결과 미통보시 과태료 부과</li> <li>-허위로 평가서 작성한 자에 대한 벌칙 신설</li> <li>· 영3차개정시(98.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립·하천공사 및 공항개발사업 등 환경영향 평가협의요청시기를 공사시행의 고시 또는 허가단체로 조정</li> <li>-규칙3차개정시(99.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협의내용관리책임자의 준수사항 폐지</li> </ul> </li> </ul> </li> </ul>

다음호에 계속…